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2018. 0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인구 등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10,447명으로 추정
- 나.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삶의 질 향상 및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을 위한 교육 지향
-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향
-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장

나.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다. 경비지원 및 대상(제6조)

- 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
- 행사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참가자의 체험학습 운영비

라. 문해교사 양성 등(안 제8조)

-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에 123백만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8.3.5.~3.25.)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원안동의(2018.1.30. 기획감사실-1405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8.2.13. 기획감사실-2053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2018.1.30. 주민생활지원과-7128호) 반영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창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성별·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진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3. 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3.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 가. 사업추진비
 - 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4.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

② 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문해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으로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 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성인문해교육 진흥,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업무의 위탁
3. 「평창군포상조례」 : 제10조의 표창
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생략)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 제1항의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액 : 123,000천원

- 산출근거

· 문해교실 운영비 : 100,000원 × 240명 = 24,000,000원

· 문해교육사 활동비 : 660,000원 × 15명 × 10개월 = 99,0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예산부서 협의완료)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연락처	(033) 330 - 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23,00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615,000
	성인문해교실 운영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문해교육사 활동비	99,000	99,000	99,000	99,000	99,000	49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